

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제 호 | 의결사항 |
| 의결 연월일 | 2023. . . (제 회) | |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3. . . |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희귀질환 진단·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재난적의료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폐지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에 의약품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구입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26. ~ 2023. 2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외래진료(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외래진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외래진료”로, “구입한 의약품 비용”을 “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구입한 의약품 비용”을 “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”으로 한다.

1. 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(이하 이 항에서 “의약품등구입비용”이라 한다)

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단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심의위원회가”를 “보건복지부장관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1.5배의”를 “100분의 300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한

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3조(재난적의료비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.</p> <p>1. <u>1회의 입원진료(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입원진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구입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의약품 비용(이하 “의약품 비용”이라 한다)</u></p> <p>2. <u>최종 외래진료(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외래진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전 1년 이내에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에서 발생한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</u></p> <p>3. <u>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의 입원진료와 외래진료가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일련의 치료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</u></p> | <p>제3조(재난적의료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(이하 이 항에서 “의약품등구입비용”이라 한다)</u></p> <p>2. --- <u>외래진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</u>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
는 해당 입원진료·외래진료
비용 및 각각의 진료과정에서
구입한 의약품 비용

③ (생략)

제4조(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
위원회의 운영) ① 법 제7조제1
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정
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
회”라 한다) 위원의 임기는 2년
으로 하되, 법 제7조제3항제4호
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
(職)에 있는 동안 재임(在任)한
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
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
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
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
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
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
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

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
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
경우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
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
의장이 된다.

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
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에 소집한다. 이 경우 재적위원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
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
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
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
명을 둔다. 이 경우 간사는 보건
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
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
명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
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
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
한다.

제5조(실무위원회에 대한 위임사

<삭 제>

항)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심의
위원회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
업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
회”라 한다)에 위임하는 사항은
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필
요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으
로 한다.

제6조(실무위원회) ① 다음 각 호
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
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
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실무위원
회를 둔다.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
공단 이사장이 공단 분사무소
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
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.

1. 제5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
2.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
단서에 따른 초과지급 인정
여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
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
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
사항

② 실무위원회는 지역별로 공단
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

<삭 제>

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41명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의료법」에 따라 전문
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
년이 지나고 병원급 의료
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
로서 의약 관련 협회·학
회·단체에서 추천하는 사
람 20명 이내

나. 공단 소속 의사 1명

2.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 경력

이 3년 이상이고, 「사회복지
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
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
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에서
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
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

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
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
직 중인 사람 6명 이내

4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공단 직원 1명

나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
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
가원(이하 “심사평가원”이

라 한다)의 장이 그 소속
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
람 1명

다.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
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
관련 법인·단체에서 추천
하는 사람 4명

라. 해당 분사무소가 소재하
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
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도
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
1명

5.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
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
하고 있거나 근무 또는 활동
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
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
풍부한 사람 3명 이내

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해당
실무위원회의 관할에 소재하는
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제2항의
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
을 선정할 후 이들을 소집하여
개최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
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
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하

여야 한다.

1.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: 2명

2.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: 1명

3. 제2항제3호, 같은 항 제4호라
목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
위원: 1명

4.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
따른 위원: 각 1명

5. 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:
1명(법 제20조제1항제5호에
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
련 법인·단체가 있는 경우에
한정한다)

④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마
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
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
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
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
정한다.

제8조(외래진료 지원대상 등) ①

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”
이란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
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치료과정

<삭 제>

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말한다.

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과정에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「약사법」에 따라 등록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

제10조(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) ①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이하 “금융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의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(이하

제10조(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) ①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-----

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질환 특성, 가구 여건,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초과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(年)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.5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제15조(결손처분) 법 제19조제1항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4.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100분의 300 -----

제15조(결손처분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| |
| 연 락 처 | (044) 202 - 2664 |